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40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허 영·김태선·위성곤

박상혁•박 정•장철민

박지원 · 임호선 · 윤준병

홍기원・황 희・김영환

김영진 • 이병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담이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동법이 통과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고령 출산 증가로 장애 영유아가 빠르게 늘고있고 이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

영유아 장애의 경우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데, 발견과 치료로 이어지는 연계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특히, 이를 국가가 전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지자체의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이시급함.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위

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여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정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절	6		
차,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u>정한다</u> .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